

한림대학교 KELI 사무국(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 본 협약에 서명한 각 기관(이하 개별적으로 “참여기관”,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고등교육 AI 교육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실증하고 이를 참여 대학에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KELI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① 본 협약은 고등교육의 교육 과제와 에듀테크 기술을 연결하여 AI 교육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실증하고, 검증된 서비스를 KELI Marketplace를 통하여 참여 대학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협력의 기본 사항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
 1. 개별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AI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2. 실제 수업에서의 실증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 그 근거를 축적한다.
 3. 검증된 서비스와 성과를 참여 대학에 확산하고 국내외 교류로 넓힌다.

제2조 (정의)

1. “KELI”란 대학·에듀테크 기업·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등교육 AI 교육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실증·확산하는 공유 플랫폼과 그 협력 체계를 말한다.
2. “HAI Ecosystems”란 주관기관이 개발하고 자체 교육환경에서 실증한 AI 교육 서비스군을 말한다.
3. “KELI Marketplace”란 HAI Ecosystems와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등재하고 참여 대학의 도입을 지원하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4. “공동연구”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의 개발, 실증 및 효과 검증을 말한다.

제3조 (참여기관의 지위)

- ① 참여기관은 대학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및 해외회원으로 구분하며, 권리·의무와 회비는 협의체의 제 규정에 따른다.
- ② 참여기관은 협의체 내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본 협약은 당사자 간에 조합,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 (KELI Marketplace)

- ① 협의체는 HAI Ecosystems와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등재하고 참여 대학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KELI Marketplace를 운영하며, 그 실무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 ② 등재는 사무국에 대한 신청과 품질·윤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며, 심사는 교육적 적합성, 품질·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 지원 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미달이나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같은 위원회의 의결로 등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등재된 서비스는 참여 대학에 공개하되, 등재가 품질 보증이나 도입 의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도입 조건과 이용료는 참여기관과 도입 대학이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공동연구)

- 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국과 해당 참여기관은 개시 전에 연구의 범위와 일정, 역할 분담, 데이터 처리 방법, 비용 분담과 산출물의 귀속을 공동연구확인서로 정한다. 공동연구확인서는 본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상충하는 경우 우선 적용한다. 다만 제7조와 제8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관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개시하며,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연구 결과의 공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의 역할과 비용)

- ① 주관기관은 협의체와 KELI Marketplace의 총괄 관리와 조정을 담당하고, 실증 환경, 서비스 매칭, 교육·컨설팅, 성과 확산과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한다.
- ② 참여기관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성실히 투입하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며, 관계 법령과 협의체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본 협약의 체결만으로 특정 규모의 투자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협의체에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와 기술·표준위원회 및 품질·윤리위원회를 둔다.

- ④ 총회는 전 참여기관의 대표로 구성하고 연 1회 정기로 개최하며,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 참여기관의 가입과 참여 종료의 승인을 의결한다.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⑤ 총회는 재적 참여기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 참여기관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세부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⑥ 참여기관은 협의체의 제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고 통상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증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 ① 각 당사자가 협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하며, HAI Ecosystems에 관한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 ② 공동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지분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연구확인서로 정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예산·데이터·교수설계가 투입되어 개발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 ③ “KELI”와 “HAI” 명칭·표장의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참여기관은 사무국의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참여 및 등재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사의 제품명·서비스명·상호 또는 도메인명에 사용하거나 상표로 출원·등록할 수 없다.

제8조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AI 윤리)

- ①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 의무는 협약 또는 참여의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 ② 학습 데이터의 소유권은 이를 생성·제공한 대학에 귀속한다. 모델 학습을 포함한 2차적 활용은 가명 처리 후 정보 주체와 제공 대학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수행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과 사무국에 통지한다.
- ③ 당사자는 인간 중심의 가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AI 교육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며, 학습자의 평가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교원의 검토를 병행한다.

제9조 (협약 기간 및 참여의 종료)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갱신 또는 협약 기간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3개월 전 서면 통지로써 탈퇴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AI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로써 참여를 종료할 수 있다.
- ③ 참여가 종료된 기관의 서비스는 등재를 말소하고, 해당 기관은 관련 표시를 제거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과 진행 중인 공동연구는 각 계약에 따라 존속하고, 제7조와 제8조는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10조 (기타)

- ① 본 협약은 특정 공동연구의 수행, 특정 서비스의 도입 또는 특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연구확인서와 개별 계약에 따른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체의 제 규정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참여기관의 수와 동일한 부수로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장

한림대학교
KELI 사무국 · 총회

최 양 희

(로고)

(기관명)

대 표

홍 길 동